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2월 일
발 의 자 : 배명호의원외 2인

1. 제정이유

○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안 제3조)

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임명하며 당연직은 귀농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촉직은 군의회 의원, 농협 성주군지부 금융지점장 등으로 구성됨(안 제3조)

다.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안 제11조) 및 사업의 지원(안 제12조)과 주택수리비 지원(안 제13조)

라. 귀농자 사후관리(안 제14조) 및 지원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안 제15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농지법」

나. 기타사항 : 친환경농정 및 예산부서와 협의

※ 지자체별 조례제정 현황, 관련부서(친환경농정 및 예산)의견 등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타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성주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2장 귀농위원회 운영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업무 담당과장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금융지점장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라.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자에 대한 지원

제11조(교육훈련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택수리비 지원)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4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군수는 귀농자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